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가단115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3541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가단11531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 변호사 이범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 변호사 박종익

변론 종결 2018. 5. 16

판결 선고 2018.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2016. 9. 7. 접수 제76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5. 6. 10. 접수 제33931호로 2005.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6. 9. 7. 접 수 제76534호로 2016. 9. 7. 매매(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매’ 라고 한다)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언니인 C가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이다.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2009다105215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등기부의 추정력을 뒤집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대

별지